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지방보훈청(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융합형 보훈문화교육 콘텐츠를 개발·확산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보훈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학교에서의 보훈문화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상호 연계·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3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교과 융합형 보훈문화교육 콘텐츠의 공동 연구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2.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의 보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보훈교육 관련 체험·실습 활동 지원
4. 그 밖에 양 기관이 추가 협의한 사항

제4조(효력)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협의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5조(협약의 변경·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협약의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총장 장신호

장신호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청장 이승우

이승우